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 추가〉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99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소병훈 · 부승찬 · 이수진 · 정성호 · 이기현 · 이병진
허 영 · 김교홍 · 안태준 · 노종면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 의안번호 : 409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요안건의 심사 및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u>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65조(청문회) ① ----- ----- <u>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u> ----- ----- -----.

청문회는 제13대국회 「국회법」 전부개정(1988. 6. 15.)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써, 국정 현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진상을 파악·조사하거나 중요한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행정권의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현행법 제65조¹⁾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및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경우, 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청문회 개최요건을 구체화하여 청문회를 통한 현안 조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회가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참고로,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이미 현행법에 근거하여 다수 실시되고 있음.

[표-2] 현안 조사 관련 청문회 실시 현황

구 분	상임위	청문회 주제
제20대 국회	기재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안행위	○○○ 농민 청문회
	과방위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제21대 국회	문체위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교육위	○○○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제22대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1차)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2차)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3차)
	과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다만, 제19대국회에서 청문회 실시목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²⁾이 2016. 5. 19.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 사유는 ① 개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② 현안 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국정조사 청문회를 우회하여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③ 현안의 포괄성으로 인한 청문회 대상 확대 및 상시적 청문회 개최, 국정감·조사와 현안 조사 청문회 등의 중복 적용으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① 의회는 일반적 국정통제권을 보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상 근거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 이를 부정할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고,⁴⁾ ② 재적의원

현행	개정안
第65條(聽聞會)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부터 證言·陳述의 청취와 증거의 採擇을 위하여 그 議決로 聽聞會를 열 수 있다.	第65條(聽聞會)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심사경과 : 2015. 7. 9. 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 의결
2015. 7. 15. 법사위 의결
2016. 3. 2. 본회의 수정안 제출 (청문회실시대상 확대 조항 삭제)
2016. 5. 9.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6. 5. 23. 정부 이송
2016. 5. 27. 정부로부터 재의요구, 2016. 5. 29. 임기만료폐기

4분의 1 이상 요구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 달리 현안 조사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므로 청문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③ 현안 조사 청문회는 시의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 오히려 국정감사를 보완할 수 있고 청문회 문화·운영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정과 기업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⁵⁾는 반론도 있음.

따라서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내실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 사례, 법 개정의 실효성 및 지난 정부의 재의요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4) 김종철, 「대통령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전문가간담회 발언요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6. 8.
 홍완식, 「국회법 제65조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6. 8.
 5) 양승함,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소견」,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6. 8.
 이정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2016. 5. 27)에 대한 의견」,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6. 8.